

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 안내문(2014년 1차)

□ 관련

- 노사합의(2010.10.28)
- 경지2012-394 "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입 및 중도인출 시행 계획"(2012.08.01)

□ 목적 : 긴급자금 필요한 직원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

□ 주요내용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▪ 퇴직연금제(DB형) 가입 직원 중 법정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직원 - 임원, 상무보, 전문컨설턴트/계약직 제외
제 외	▪ 급여/퇴직금 압류자 ▪ 연대보증을 통해 회사(기금) 대부금을 받은 직원 - 단, 4월15일까지 보증보험으로 대체 또는 전액 상환 완료시 가능 ▪ 명예퇴직신청자
신청 Type (택일)	▪ DC형 : 전환일 기준 전후 적립금 모두 DC형으로 운용 ▪ 혼합형(DC+DB) : 전환일 기준 이전 적립금 DC형 + 이후 적립금 DB형 운용 ※ [양식#1] 퇴직연금제 전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필수
인 출 사 유	▪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 구입하는 경우 ▪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▪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일 정	▪ 중도인출 시행 공지 5T : 4. 10 ▪ 금융기관별 중도인출 신청 접수 : 4. 10 ~ 4. 17 ▪ DC 전환 금액 확정 및 DB 상품 해지 : 5. 2 ▪ DC 전환일 : 5. 7(예정) ※ 중도인출 가능일은 DC 전환일로부터 5 영업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신청 금융기관에 일정 확인 필요
금융기관	▪ 생명보험 : 삼성, 교보, 한화, IBK연금보험, 미래에셋, 신한 ▪ 손해보험 : 삼성, LIG ▪ 증 권 : 미래에셋, 삼성, 신한, 하나대투, 현대, 대신 ▪ 은 행 : 기업, 신한*, 국민, 외환, 농협, 산업 ※ 신한은행 퇴직연금 담보대출자는 신한은행만 선택 가능
DC 전환금액	▪ 2013.12.31 기준 퇴직금 전액

□ 준비서류

- 공통서류 : 퇴직연금제 전환신청서(Type 선택), DC가입신청서 및 중도인출신청서
- 신청사유별 추가 증빙서류

신청사유	증빙 서류	발급처
무주택자의 주택 구입	▪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	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민원24)
	▪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▪ 매입 주택의 등기부등본	주민센터, 구청, 온라인(민원24)
	▪ 무주택서약서	가입 금융기관
	▪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	
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	▪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	병원
	▪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	주민센터, 구청 온라인(민원24)
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	▪ 법원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 (최근5년 이내)	법원
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	▪ 법원파산선고문(최근5년 이내)	법원

※ 주택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는 사본 제출, 기타서류는 원본 제출

□ 주의사항

- 증빙서류는 중도인출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 또는 작성분만 인정
- 주택구입 경우, 중도인출 신청 접수시, 무주택자 지위에 해당하여야 인출가능
- 장기 요양의 경우,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반드시 '향후 6개월 이상'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증빙서류로 인정(고용노동부 행정지침)
-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며, 향후 DB형으로 전환 불가
- 신한은행 퇴직연금 담보대출자는 신한은행 DC형 상품으로 전환 후 인출가능

□ 연간 주요일정

- DC형 및 혼합형 전환 신청 : 연 2회(매년 1, 7월)
- 법정중도인출 사유자 추가 신청 : 연 2회(매년 4, 10월)

[양식#1]

퇴직연금제 전환 신청서

- 소 속 :
- 성 명 : (인)
- 사 원 번 호 :
- 주민등록번호 :
- 전 환 신 청 일 :

구 분	확정기여형 (<u>Defined Contribution, DC형</u>)	혼합형 (<u>전환일 기준 과거분 DC+미래분DB</u>)
유 형 (택일)	☐	☐ ※'13.12.31 이전 퇴직금은 DC형, 1.1일 이후 퇴직금은 DB형
금융기관 (택일)	▪ 생명보험 : 삼성☐ 교보☐ 한화☐ IBK연금보험☐ 미래에셋☐ 신한☐ ▪ 손해보험 : 삼성☐ LG☐ ▪ 증 권 : 미래에셋☐ 삼성☐ 신한☐ 하나대투☐ 현대☐ 대신☐ ▪ 은 행 : 기업☐ 신한☐ 국민☐ 외환☐ 농협☐ 산업☐	
퇴직급여 수준	•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상이	• DC형 :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상이 • DB형 : 평균임금 x 근속년수 - 전환이후부터 근속년수 새로이 가산
운 용 Risk	• <u>개인 부담</u> ※ 운용손실 책임을 개인이 부담	• <u>DC형 : 개인 부담</u> • <u>DB형 : 회사 부담</u>
제 도 전 환	• <u>DB형 및 혼합형 환원 불가능</u>	• <u>DB형 환원 불가능</u> • <u>DC형 전환가능</u>

※ 유형과 금융기관은 택일, 복수선택 불가

[참고1]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비교(DC형 vs DC형+DB형)

구 분	확정기여형 (Defined Contribution, DC형)	혼합형 (과거분 DC형+미래분DB형)
개 념	-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/12을 직원이 개설한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(매년 중간정산) -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상품을 직원이 직접 선택/운용	- DC형과 DB형의 두 제도를 혼합 - 전환시점 기준 이전 퇴직금은 DC형으로 전환하여 개인이 운용 - 전환시점 기준 이후 최종 퇴직금은 퇴직전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의해 결정
퇴직급여 수준	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상이	- DC형 :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상이 - DB형 : 평균임금 x 근속년수 - 전환이후부터 근속년수 새로이 계산
운용 Risk	개인 부담 ※ 운용손실 책임을 개인이 부담	DC형 : 개인 부담 DB형 : 회사 부담
중도 인출	- 법령에 의한 요건 충족 시 가능 누적 운용 DC 금액 인출가능	- 법령에 의한 요건 충족 시 가능 DC형 운용금액 인출가능 DB형 적립 금액은 인출불가
제도 전환	DB형 및 혼합형 환원 불가능	DB형 환원 불가능 DC형 전환가능
사업자 변경	연간 2회 사업자 변경가능(단, 변경시 약정이율 패널티 등은 운용자 부담)	
개인 추가적립	개인형퇴직연금(IRP), 연금저축 포함 연간 최대 1,800만원 추가불입 가능	

[붙임 1] 업무처리 프로세스

Process	세부내용
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 공지	· Kate 전사게시판 · BIT-ERP > HR > 개인업무
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및 서류 접수	· DC형 가입신청서, 중도인출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· 서류 접수, 제출, 보관처 : 해당 금융기관
신청서류 검토	· 검토기관 : 해당 금융기관
금융기관별 최종 신청자 현황 통보 및 DC형 계좌로 전환	· 보수팀에서 금융기관별 대표계좌로 자금이체
중도인출	· DC계좌로 전환 후, 해당 금융기관에 중도인출 증빙서류 검토 후 인출 (전환일 기준 5영업일 이상 소요)